

# 개화기 조혼 담론의 가족윤리의식의 함의

An Implied Meaning of Family Ethics Consciousness of Early Marriage  
Discourse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시간강사 전 미 경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Lecturer : Jun, Mi Kyung*

##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V. 조혼 담론의 함의 |
| II. 개화기 조혼의 실상                     | VI. 맷음말      |
| III. 담론에서 제기되는 조혼의 해(害)            | 참고문헌         |
| IV. 조혼 담론에서 동태(動態)되는<br>근대적 가족윤리의식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 implied meaning of family ethics consciousness from the interpretation of early marriage discourse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For the analysis, the estimated time frame of the enlightenment period will be from 1860 to 1910 that was the time when the Japanese annexed Korea. The discourse of newspapers, Shinsoseols and magazines which are the text of the study have been analyzed with the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intellects stated that the traditional practice of early marriage should be abolished, and should be replaced by a marriage that the groom and the bride dually agree upon. This argument meant that marriage was not an event for the parents or the family, but a life event for the couples themselves.
2. The practice of early marriage was criticized as it was one of the main reason of making marital relationship miserable. Also it was stated that the children could not follow the role of husband and wife. The importance of marital relationship was emphasized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 marital relationship was the basic relationship within family and society.
3. The discourse, criticizing the parents' behavior that enforced the early marriage of children, stated that the children should not be the possession of parents but the public being of society.

4. The discourse also stated that the society and the parents should recognize their children as the human being to be protected from the early marriage which would result in physical damage of their children. Also the discourse asserted the rights of the children including their rights of education. The childhood were being formed in these discourses.

**주제어(Key Words):** 개화기(enlightenment of period), 조혼(early marriage), 가족윤리의식(family ethics consciousness)

## I. 들어가는 말

조선사회가 근대로 이행하는 첫 시점으로서의 개화기<sup>1)</sup>는 조선의 대내적 대외적 위기가 증폭된 시기이면서 동시에 그 어느 시대 못지 않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의지 또한 고조되었던 시기이다. 내부적으로 봉건적 지배질서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한편 진기한 문물을 앞세워 조선사회에 밀고 들어오는 제국주의적 열강의 침탈 앞에 조선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졌다.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고자 했던 청년개화인들은 진보적 관료로 진출하여 위로부터의 개혁을 선두 지휘하면서 중요한 사회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개화'는 당시의 척사위정파를 제외하고는 서구의 수용을 당위적인 것으로 여겼던 지식인들에 의하여 제창된 조선의 당면과제가 되어 활발한 개화운동이 사회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개화기의 주요한 시대적 특징 중의 하나는 조선의 지식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서구'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경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식인을 포함하여 당대의 사람들은 이전에는 전혀 접할 수 없었던 서구를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기존의 일상을 전과 다른 측면에서 조망하고 있었다. 즉 서구문물의 수용은 곧 일상의 사람들이 조선 안에서 서구를 경험하도록 만들었으며, 그 결과 조선인의 의식 안에는 새로운 서구적 준거들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제도와 윤리의식을 전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조망하고 있었던 서구적 준거들은 서구의 수용이 당위적인 사실이 되면서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었다. 또한 조선은 '우승열패'의 힘의 논리아래 재편성되는 세계사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조선의 당면과제로

'부국강병'이 부각되었고 마침내 일부 지식인들은 제국주의의 침탈까지 옹호하면서 조선사회의 '경쟁력의 적당'을 부르짖었다. 따라서 조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사회 여러 분야의 전반적인 개혁은 '구국'을 위한 사업이 되었으며, 이러한 개혁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있어 서양의 제도와 윤리의식은 본받아야 하는 모범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가족제도의 개혁이었다. 문명한 서구인의 가족제도와 가족윤리의식이 소개되면서 남존여비의 남녀관과 그를 바탕으로 한 내외법, 그리고 축첩제, 과부의 개가금지, 조혼의 가족제도는 전과 다른 각도 즉 서구적 윤리의식으로 비난받게 되었고, 이러한 제도의 타파는 조선이 '문명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되었다. 지식인들은 '구습'의 가족제도를 비난하면서 그 제도에 담긴 윤리의식의 타파를 주장하였고, 이것은 다시 조선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족윤리의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개화기의 가족윤리의식은 개화기 이후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등 그 어느 분절점보다도 변화의 굴곡이 심화되었다.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윤리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윤리는 인간이 원만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간 스스로가 만든 당위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는 특히 가치관의 핵심을 이루는 윤리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마련

1) 이 연구에서는 서구의 이질적인 외부세력에 의해 조선 사회의 동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860년에서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는 1910년까지를 '개화기'로 보고자 한다.

이다. 개화기에 봉고되기 시작하는 사회제도는 유교적 질서로 짜여진 가족윤리의식에 의구심을 품게 하였으며, 서구적 윤리의식은 기존의 가족윤리의식의 당위성에 거세게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갑오경장 의안에 조혼금지가 포함될 정도로 근절되어야 할 대표적인 가족제도로 지목되었던 조혼의 실상을 살펴보고, 조혼의 담론 안에서 새롭게 등태(動態)되는 근대적 가족윤리의식의 일면을 읽어보고자 한다. 당시의 뜨거운 화두 중의 하나였던 조혼을 비난하는 담론 안에는 유교적 질서에 의해 짜여진 조선의 가족윤리의식에 대한 비난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비난과 함께 새롭게 제시되는 대안 안에서 조선의 가족윤리의식은 연속과 단절, 응집과 해체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

개화기의 지식인들은 조혼의 폐지를 위한 활발한 계몽적 활동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었고, 그것은 특히 신문, 신소설, 잡지의 계몽담론에서 분출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것을 분석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당대의 신문 가운데에서도 일반적으로 '민족지'로 분류되고 있는<sup>2)</sup> 독립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대한민보 등의 담론과 함께 신소설<sup>3)</sup>, 그리고 잡지에 실린 조혼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무엇인가를 주장하는[設] 기호들의 집합[言]'(미셸푸코 지음, 이정우 해설, 1993: 177)을 의미하는 담론(discourse, discours)에는 담지자의 의식과 지향성이 수반되어 있어 있음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개화기 '조혼'이 어떤 맥락과 배치 안에서 '문제'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발견되는 근대적 가족윤리의식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여기에 실린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구체적으로 조혼의 어떠한 점을 비난하고 있었으며, 그 비난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조선이 새롭게 지향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근대적 가족윤리의식의 한 부분을 읽어보고자 한다. 개화기가 한국사에서 중요한 전환기라고 볼 때 새롭게 재편성되는 가족윤리의식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이러한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 II. 개화기 조혼의 실상

조선초 위정자(爲政者)들은 바람직한 혼인연령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녀가 일정 연령이 되면 혼인을 하도록 하여 조혼이나 혼인시기를 놓침으로써 비롯되는 사회문제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조혼은 혼인을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인식하였던 전통사회에서 곧잘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의 경우 조혼의 폐습을 금지하기 위한 혼연령(許婚年齡)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세종 22년의 일인데 이때 의정부는 조혼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주자가례』에 명시된 연령에 준해 법정 혼인연령을 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남녀 각각 16세 14세 이상으로 혼연령에 대한 규제가 확립되었고, 이후 세조 연간 남자 14세, 여자 13세 이상으로 혼연령이 인하되었다가 그후 『경국대전』에는 남자 15세, 여자 14세로 거의 『주자가례』에 준하는 것으로 환원되었다(장병인, 1997: 205-206).

조선초 조혼폐지를 위한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곧 당시의 일상에서 조혼이 만연하였고 이로 인한 일련의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사회에서 조혼이 일반화된 주요한 계기는 먼저 원나라의 공녀요구에서 찾을 수 있으며, 조선왕실의 간택의 필요로 말미암은 금혼령에 의해 조혼은 더욱 촉발되었다. 조선의 왕실은 왕가 자녀의 배우자를 얻기 위하여 전국에 금혼령을 선포하였고 이 금혼령은 초간, 재간, 그리고 삼간에 걸쳐 배우자를 결정한 이후에야 해제되었는데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금혼령은 사대부가를 포함하여 민가에서 조혼을 더욱 부추기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

2) 개화기 우리 나라에서 발행된 신문의 성격에 따른 분류는 김민환(1988), 34-35 참조.

3) 지금까지 발행된 신소설 전집은 『한국신소설전집』(을유문화사, 1968)과 『신소설 번안(번역)소설』(아세아문화사, 1978). 그리고 『신소설 전집』(계명문화사, 1987)이 있는 데, 이 연구에서는 을유문화사에서 발행된 것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한국신소설전집』을 '전집'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4) 담론분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전미경(2001a), 68-69 참조.

다. 이러한 요인 이외에도 조혼은 가계계승자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었으며, 위정자들은 동성동분의 금혼 등 혼인이 불가능한 제한 조건을 규정함과 동시에 상중금혼(喪中禁婚) 등으로 혼인을 할 수 없는 시기를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혼인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조혼은 혼인실기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더욱 촉진되었다(김두현, 1935: 309-321).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선사회에서 조혼은 일반적인 혼인관행으로 자리 매김하게 된다. 특히 조선 후기로 접어들수록 '부계적 가족주의'의 전통이 확고해짐에 따라 양반가에서는 계사(繼嗣)를 위한 조혼이 실천되었고, 점점 더 괴폐해지는 경제적 상황 아래에서 일반인들은 딸을 팔거나 며느리를 사는 등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조혼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화기에 이르러 '새로운 출발'을 부르짖는 많은 지식인들에 의하여 조혼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조선의 혼폐(婚弊)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조혼'이라고 하면서, '대한 풍속의 제일 악습'인(독립신문, 1899. 6. 20) 조혼은 '사람에게 극히 해로운 것이 이루 말할 수 없기'(독립신문, 1899. 7. 20)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혼속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개화기의 조혼은 금혼령을 피하기 위해서, 계사를 위해서, 혹은 혼인시기를 놓칠 것을 우려하여 이루어진 이전의 조혼양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당시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조혼을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벌써 나흘을 굶어서 젖먹이는 울 근력도 없어지고 밥 먹는 계집아이는 잠자는 듯이 숨도 크게 쉬지 못한다'('금의 쟁성', 전집 6권: 488.)고 하는 「금의 쟁성」의 서울집의 읊조림은 흔한 일상이 될 정도로 당시의 경제적 상황은 참혹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특히 여아의 매매와 매매혼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는데 이를 지탄하는 목소리에서 당시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즉 딸을 파는 자이나 사는 자가 다 일반이거늘

슬프다. 우리 나라 여식 매매하는 풍속이 서관서부터 십이삼 세만 되게 되면 엽전으로 소불하 수백량 이오. 다시 천여량씩 받고야 딸을 남에게 보내고 … 그 풍속이 점점 벌여서 황해도 함경도 강원도로 그 자식 파는 풍속이 성행하더니 근일에는 왕화 지근지처에서 자식을 종으로도 팔며 … (제국신문, 1900. 5. 11)

6세는 70량, 7세는 80량, 10세 이상은 수백량이라고 하면서 나이에 따라 값이 매겨져 짐승처럼 매매되는 여아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담론(제국신문, 1901. 3. 25)에서 개화기 여아의 매매와 매매혼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개화기에 이르면 특히 매매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여아의 조혼은 가족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었고, 이를 헐책하는 지식인들은 조혼을 더욱 조선의 '제일 악하고 괴폐한 풍속' (대한매일신보, 1907. 12. 11)으로 규정지으면서 조혼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몽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개화기의 조혼금령은 1894년 수립된 개화파 정부에 의해 단행되었다. 즉 정부는 '남녀의 조혼을 엄금하여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에 이르러서 비로소 결혼을 허할 것'이라는 의안을 갑오경장에 포함시킴으로써(『관보』, 갑오년 6월 29일: 男女早婚 極宜嚴禁 男子二十歲 女子十六歲以後 婚許嫁娶事) 합법적인 혼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연령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5세만 되어도 혼인이 늦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팔구 세에 혼인하는 사람이 무수' (제국신문, 1907. 10. 12)한 것이 당시의 실상이었기에 남자 20세, 여자 16세로 혼인연령을 정한 것은 현실성이 없는 법조문이었다. 그러므로 이 금지안은 일상의 변화를 피할 수 없는 혼례에 지나지 않았기에 1907년 8월 15일 순종은 다시 '조혼금지와 혼인이 가능한 연령에 대한 범위' (『순종실록』 순종 1년 8월 14일)에 관한 조칙을 내려야만 했다.<sup>5)</sup>

5) 이 때에 조혼금지 조칙이 다시 반포된 배경은 대한자강 회의 역할이 자못 커다. 즉 대한자강회는 조혼폐해에 대한 논의를 동회의 의안으로 채택하여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면서 그 실행을 촉구하였다. 1906년 7월 13일 대

융회 원년 팔월 십오일에 우리 성신문무하옵신 대황제폐하게옵서 조칙을 내리사 가라사대 인생이 삼십에 아내를 두며 이십에 시집감을 옛적 삼대의 성한 범이거늘 근래에 일찍 혼인하는 폐로 국민의 병원(病源)이 막심한 고로 년전에 금령을 선포하였으되 지금까지 실시치 못하였으니 … 유신(維新)하는 때를 당하여 풍속을 개량(改良)함이 가장 급히 힘쓸 바이다. … 남자의 나이 만 십칠세와 여자의 나이 만십오세 이상으로 비로소 가취(嫁娶)하되 각별히 준행하여 어김이 없게 하라. … 만일 남자나 여자의 나를 모년(冒年)하던지<sup>6)</sup> 혹 관보에 반포하기 전이라 하여 오늘내일 불복일 행례를 하는 자 있으면 이는 왕령을 봉행치 않는 역신일뿐더러 국가사회(國家社會)의 큰 죄인이라 하노라. (대한매일신보, 1907. 8. 17)

'나라를 근심하는 선비가 혹 문장을 지어 신문과 잡지에도 기재하며 혹 연설도 하고 어떤 단체에서는 정부에 헌의(獻議)도 하되 종시 시행이 되지 못하여 항상 한되는 바' (제국신문, 1907. 8. 17)라는 담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의 지식인들은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조혼제도의 부당함과 조혼금지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계몽활동을 활발히 전개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에게는 조혼을 금할 수 있는 법안을 강력히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바로 순종의 조혼금지 칙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혼금지를 위한 법제정과 지식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내려오던 조혼의 혼속이 쉽게 달라질 수 없음을 자명한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 인민의 정도로 관찰하건대 지금 남자 십칠세 여자 십오세 혼인하라신 조칙도 문구가 될 뿐이오 정부의 당국자들부터 시행하지 아니하니'(제국신문 1907. 10. 13)라고 하는 기사에서도 익을 수 있듯이 순조의 칙령은 지배층을 포함하여 일반인의 조혼도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15세 이하의 조혼을 '일절 엄금하기로 결정'하였다(경남일보, 1910. 6. 5)는 등의 조혼금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강경책은 '불복일(不卜日)'에 혼례를 치르거나 혹은 정부의 눈을 피해 '밤에 몰래 혼인'을 하는 등 혼례에 있어 기형적 변형을 초래하였다(황성신문, 1907. 8. 23; 제국신문, 1907. 9. 19; 황성신문, 1909. 9. 3). 그 한 예

로, 관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몰래 치러진 혼례로 말미암아 신랑을 태운 인력거가 신부집을 찾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하였다<sup>7)</sup>.

### III. 담론에서 제기되는 조혼의 해(害)

개화기 지식인들은 조혼을 비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혼으로 말미암은 구체적인 해악을 지적하면서 조혼폐지의 당위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 일례로 주시경 선생은 망국을 막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조혼이 타파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고생과 걱정 투성이를 만드는' 조혼의 해(害)를 열거하고 있었다.

일찍이만 혼인하는 것은 낙이 되기는커녕 고생과 걱정 투성이를 만드는 것이라 생명의 잔악함과 인종이 줄어드는 것과 부식함과 곤구함과 게으름과 각색질병과 사망과 집안에 불화함과 자질이 폐가망신함과

한자강회 임시평의회는 여병원의 시안으로 '여자는 만 16세, 남자는 만 18세 이전의 嫁娶를 不許'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을 가결하여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작성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때 정부측에서는 이미 을미(1895)년에 내각에서 조혼금지의 안을 의안으로 결정하였는데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으니 이의 실행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때 심선성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을미년에 결정한 의안이 있어도 내각 결의안이기오. 차법률로 반포하였을지라도 다년을 실행치 아니하였으면 법률이 자별에 지하였음이니 다시 법령으로 반포한 연후에야 그 효력이 유한 줄로 생각하옵나이다.『대한자강회월보』 제 2권 (광무 10년 7월: 1906년) p.63)

이 건의서는 결국 1년만에 정부에 의하여 채택되어 남자는 만 17세, 여자는 만 15세 이상이라야 嫁娶할 수 있다는 순종의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다(김용옥, 1982: 41).

6) 나이를 속이든지

7) 近日 巷說을 得聞호則 男女嫁娶의 年齡區別호 詔勅頒布以後로 一般人民이 何以推測인지 不知호거니와 不卜日호야 行禮 험은 始舍호고 或 夜中이라도 婚姻設行호는 者가 多有호다는데 再昨夜 碧洞等地에 何許人이 新郎을 人力車에 搭乘하고 先爲發行호야 鐘路로 向往호야 人力車軍이 該新婦家를 不知호 얻던지 他處로 轉往호지라. 新郎後從者가 不知去處호야 鐘路附近 坊曲을 巡回호야 困境이 莫甚호다더라. (황성신문, 1907. 8. 22)

시모와 며느리의 다툼과 인천간에 싸움과 내외간에 소박과 여자의 간통과 도망과 남자의 외입과 복첩과 노름과 잡류 됨과 도적 됨과 유의 유식함과 친척에게 폐를 끼치는 제반 악증이 다 일찍이 혼인하는 폐에서 근원되어 퍼져 나오는 고로 이렇게 악하고 무식하고 조잔한 가정이 합하여 그 나라가 쇠잔한 병이 들어 망함에까지 이르는 것이 다 일찍이 혼인하는 폐에서 생기거늘 이 근원은 바로 잡지 아니하고 말류의 다른 일만 고치고자 하면 공연히 힘과 세월만 허비할지니 지금 후로는 먼저 일찍이 혼인함을 그치고 공부를 넉넉히 하며 살림할 만한 재산을 장만하고 기혈과 골율이 아주 총장한 후에 혼인하여 집집마다 각각 잘 다스려 화락하고 부유하여 인종이 왕성하며 나라가 부강문명하게 할지라 (『가정잡지』, 1년 4호)

이때 지식인들에 의하여 제기된 조혼의 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조혼의 폐를 논하는 담론은 단지 조혼이 부당한 이유를 열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윤리적 상황의 변화에 매우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조혼이 타파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조혼에 수용된 윤리의식의 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주장의 이면은 곧 새로운 윤리 의식을 제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혼으로 인한 구체적인 해는 개화기 말미인 1909년 황성신문에 실린 '조혼의 폐해를 통론함' 이란 논설(황성신문, 1909. 9. 3: 9. 4)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담론은 조혼을 '나라를 망하게 하고 민족을 멸하게 하는 장본' 이라고 하면서 그 해를 다음의 7 가지로 정리하고 있었다.

- ① 인종의 감소: 조선의 인종이 타국과 같이 증식 치 못하고 감소하는 그 원인은 조혼의 폐로 말미암은 것인데 즉 선천적 품부가 완실하지 못하고 체격이 건강하지 못하여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 ② 인재의 결핍: 농수가 충실히여야 활발한 정신과 심원한 지혜가 생기게 마련인데 조혼으로 유소년시절 완고(完固)치 못한 농수를 손상하니 정신이 결핍되고 지혜가 얇고 짧아 위대한 인물이

성취지 못하고 있다.

- ③ 교육의 추락: 교육의 시발점이 되는 가정교육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교육의 방법을 알아야 자녀를 개도하고 배양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조혼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도리도 모른 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정교육의 근본이 없게 되고 자연히 학교교육과 사회교육도 불완전하게 되어 국민의 교육이 추락하고 있다.
- ④ 산업의 주잔(週殘): 산업은 지식을 자담하고 기력을 자노(自勞)하여 생활을 자모(自謀)하는 능력이 있고 의뢰하는 사상이 없어야 산업의 풍족이 가능할 수 있는데 조혼으로 인하여 나이 스물만 넘으면 벌써 자식이 있어 그에게 의지하려고 만 하니 조선에서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 ⑤ 지기(志氣)의 박약: 청년시절에는 각자의 천부의 성품대로 성현이나 영웅호걸 혹은 학문가와 사업가를 자기(自期)하므로 평생 결과가 이 시기에 기초하고 있는데 조혼으로 말미암아 불과 16세에 처와 자식이 있는 직분이 되어 그 넓은 지기를 규문 안에서 소진하기에 남아의 지기를 박약하게 한다.
- ⑥ 가정의 과화(乖和): 혼인을 진중히하여 배필을 택함으로써 사회와 국가의 화기를 도모할 수 있는 가정의 화기를 보전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자녀의 배필을 구할 때 그 덕성과 품행을 살펴보아야 함이 마땅하나 조혼으로는 이것을 살필 수 없다. 왜냐하면 덕성과 품행의 덕목은 성인이상이 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혼으로 가정의 화기가 손상되고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⑦ 책망(責望)의 과중: 서양제국의 풍속은 30세, 40세까지는 유년의 자격으로 대우하면서 유년의 예절로 책망하기 때문에 대기만성의 효과가 있는데 이는 조혼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는 스물이전의 사람을 장성자의 자격으로 대우하고 장성자의 예절로 책망하니 조발선위(早發先萎)의 결점이 있다.

이상에서 제기된 조혼의 해악은 당시 지식인들이

조혼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잘 대표하고 있다. 윤치호 역시 대한자강회 연설에서 조혼의 폐를 첫째, 체육상의 대해(大害)로 조혼으로 말미암아 ‘음양조통(陰陽早通)’으로 자식을 일찍 얻으나 과반수가 요절하며 또 술 담배를 일찍 배워 건강이 상하게 되며, 둘째, 지육(智育)상의 대해로서 여아는 시집살이에 골몰하고 남아는 어른 노릇에 치의(馳意)하여 학문에 무가(無暇)하게 되며, 셋째, 도덕상의 대해로 일찍 결혼함으로써 일찍 과부가 되는 참상이 빈번하며 내외간 금슬이 좋지 못하는 것과 여인을 천대하는 습속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문설(紊裊)하게 되는 것 모두가 조혼으로 말미암은 것이 다반사이며, 넷째, 경제상의 대해로 문명국의 사람은 자기의 처자를 보양할 만하여야 처를 얻기에 개인이 독립적인 반면에 우리의 경우 어린아이가 유처유자(有妻有子)하여 천근같은 부담감으로 용진(勇進)의 마음이 사그라지고 우선 당장 탈없이 편안함만을 추구함으로써 의뢰의 습속이 생겨나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커다란 손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황성신문, 1906. 7. 23).

이처럼 지식인들은 조혼으로 어린아이들의 신체적 건강을 상하게 되고,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로 말미암아 쇠잔한 국민이 양성되고 있으며, 부모의 강체에 의한 조혼으로 원만한 부부 관계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자녀를 제대로 길러 내지도 못하며, 일찍부터 어린 자녀에게 부여된 부부와 부모의 역할은 사회적 활동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교육의 기회조차 빼앗고 있다고 하면서 조혼의 폐를 개인, 가족, 국가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이처럼 당시의 담론은 조혼으로 말미암은 일련의 문제는 곧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라고 하면서 조혼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 IV. 조혼 담론에서 동태(動態)되는 근대적 가족윤리의식

조선사회의 가부장적 질서가 강화되면서 일상에

서 조혼은 더욱 보편적인 관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처럼 조혼이 흔한 일상이 되었던 동인을 윤치호의 대한자강회 연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윤치호는 ‘유해무익’ 한 조혼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사람들은 소위 조혼으로 자손을 빨리 얻을 수 있어 75·76세면 ‘오대자손이 만당(滿堂)’ 하는 조선인의 ‘일대희망’을 꿈꿔볼 수 있으며, 택혼이 용이하여 남보다 먼저 ‘가랑미규(佳郎美閨)’를 얻을 수 있으며, 노예와 달리 박의(薄衣)와 악식(惡食)에도 불평하지 않고 복역(服役)에만 몰두하는 며느리를 언음으로써 유용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유치한 신랑신부의 양징한 재미를 노인의 ‘환락(歡樂)’이라고 하면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유되던 조혼의 이(利)를 전하고 있다(황성신문, 1906. 7. 23). 이처럼 강도 높게 비난받던 혼속임에도 불구하고 조혼이 많은 사람들의 묵인아래 보편적인 혼속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조혼으로 얻을 수 있는 ‘이(利)’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조혼의 이’는 당시의 유교적 가족윤리의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즉 조혼은 가계계승자를 일찍 확보할 수 있다는 말에서 ‘적자’ 생산의 단위로서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부부관계’의 일면을 엿볼 수 있으며, 신랑과 신부의 선택이 매우 용이함을 말하는 ‘택혼의 필요’란 조혼이 사위나 며느리의 선택 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논조는 혼인의 주체가 신랑신부보다는 양가의 부모에게 무게중심이 실려있고 가문의 만남의 의미가 강한 혼인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며느리의 유용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며느리의 복역(服役)이나, 신랑신부의 양징한 재미, 즉 노인의 환락은 모두 부모나 가족 전체의 관점에서 조혼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개인으로서의 자녀보다는 부모와 가족 전체의 이익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혼의 이(利)’에 대한 비난은 곧 조혼에 담겨진 윤리의식의 비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의 지식인들이 조혼을 자녀의 관점보다는 부모나 가족의 관점에서 영위된 것으로 여기면서 조혼의 이익 역시 부모의

관점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혼으로 자녀를 번성하게 할 수 있으나 건강한 자녀를 얻기가 어려우며, 택혼이 용이하지만 전적으로 부모에 의한 택혼은 불화한 부부관계의 주요한 원인으로 비난받으면서, 자신의 기쁨만을 위하여 어린 자녀를 혼인시키는 부모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처럼 조혼을 전과 다르게 조망하고 있는 남론에서 새롭게 열리는 가족윤리의식의 지평을 엿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측면을 결혼윤리의식, 부부윤리의식, 부모윤리의식, 자녀윤리의식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결혼윤리의식: 결혼의 주체자로 강조되는 신랑신부

조혼은 혼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억혼으로 비난되었다. 즉 조혼은 혼인 당사자인 신랑 신부의 뜻이 아닌 전적으로 이들의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혼인기기에 개화기의 지식인들은 부모의 '재미'를 위해 10여세 된 아이들의 '남훈녀가'하는 조혼을 '억혼', '압제혼'으로 단정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다.

조혼하는 악습이 사람에게 극히 해로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거니와 부모가 자녀간에 혼인을 언론할 때에 장래 百년을 해로할 두 사람은 서로 모양이 어떠한지 자질이 어떠한지 피차에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고 다만 부모의 입의로 매파를 내어 정혼한 후에 주단과 택일을 보내고 받았다가 그 후에 들은즉 남자가 병신이라 하던지 규수가 극현치 못하다 하거드면 그 때 가서는 혼인을 파의 하라고 무한히 헐난하는 이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아닐지라도 남녀간에 다만 부모의 명령만 순종하여 부부가 되었으나 당초에 생소한 면목으로 일조에 만났음에 차차 장성 할수록 서로 사랑할 마음이 점점 쇠하여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박대하는 이도 간혹 있거니와 흔히 남자가 제 아내 대접하기를 구수같이하여 심한자는 서로 대면치 않는 이가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열에 八九는 부부간에 화순하지 못한 까닭으로 집안에 쟁힐하는 폐단이 쟁쟁 첨출하여 필경은 집이 멀망하는 지경에 이르니 이것은 다름아니라 혼인할 때에 부부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정

한 것이 아니오 다만 부모의 지휘로 배필삼기를 경홀이 합이니 어찌 탄식할 곳이 아니리요 (독립신문, 1899. 7. 20).

조혼의 폐를 논하고 있는 이 담론에서는 조혼 그 자체보다는 조혼으로 말미암아 혼인에 배우자 당사자들인 신랑신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단지 부모의 지휘아래 배필삼기를 일삼는 혼인의 '경홀' 합을 탄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집에 하인을 하나 두려 할 때에도 몇 년에 걸쳐 그 됨됨이를 본 후에야 비로소 '친밀히 부리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미쁘게 평생을 같이 살자' 하는 '소중한 약속'을 단지 '남의 말만 듣고' 혼인을 하니 이러한 혼인이 어떻게 성실한 약속이 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억혼으로서의 조혼을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었다.

조선 모양으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사람의 평생에 제일 소중한 약조를 하고 아내 같은 소중한 직무와 남편 같은 큰 직책을 서로 맡기니 첫째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찌 참 사랑한 마음이 서로 있으며 또 혼인하기를 아이들끼리 하니 이 아이들이 무슨 지각이 있어 사나이가 아내를 대접할 줄을 어찌 알며 계집아이가 남편이 무엇인지 알 묘리가 있으리오. 사람이 스물 이삼세가 되어야 겨우 지각이 나고 세상이 어떤 줄을 알고 옳고 그르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것을 조금마한 어린아이들을 압제로 혼인을 시켜 서로 살라 하니 이 아이들이 어려울 때에 혼인이 무엇인 줄 모르고 부모가 하란대로 하였거니와 지각들이 난 후에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라. 그런고로 읊심있는 사나이들은 첨을 얻고 음행하는 폐단이 생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를 참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오. 조선 여편네들을 압제로 풍속을 만들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하는 까닭에 속이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감히 말을 못하니 이런 부부 사는 집안이 어찌 화목하며 복이 있으리오. (독립신문, 1896. 6. 6)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개화기 지식인들이 억혼으로서 조혼을 비난했다 할지라도 그 비난의 초점은 억혼이 불행한 부부관계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점에 있었다. 따라서 담론은 아들 딸을 귀한 줄로만 아는 부모들이 '대가리에 피도 아니 마르고 입에서 젖내가 나는 어린것들을 조혼' 시킴으로써

조선에 ‘불화한 내외가 비일비재’ 하여 열에 아홉의 부부가 ‘내소박을 하느니 외소박을 하느니’ 하고 있다고 하면서(『해안』, 전집 4권: 267-268.) 부부갈등의 씨앗으로서 조혼을 비난하였다.

그리하여 개화기 조혼의 담론은 억혼으로서의 조혼이 타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결립돌인 억혼을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결혼윤리의식을 제안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의혼의 과정에 혼인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所謂 夫婦가 結婚할 時에 兩家 父母나 或其堂內親屬이 恣意行之하야 夫와 婦가 서로 奪囊一面之分이 曾無한 者로 彼此 善惡心情을 知할 수 萬無하거늘 洞房火燭係 微夜에 生面不知初人事로 百年同居에 孝養父母와 敦睦<sup>8)</sup>兄弟之極重한 職務를 擔任하니 如此히 輕忽<sup>9)</sup>沒廉<sup>10)</sup>한 事가 有하며 外貌와 中情이 兩人眼目에 怡滿 할 理가 容易하리오 然故로 첫날 疎薄하는 者 多有 하야 或者는 相離하며 或者는 名稱 큰夫人이라하고 深閨에 牢囚하고 平生不顧하야 生產을 永杜해야 自絕嫡嗣하며 使其妻로 終身拘冤케하며 嫉生감보 等 을 作妾作樂하니 爲其夫人者에게만 積惡할 뿐이 아니오 生命損에 大關係가 何如하며 未熟한 孩兒를 婚娶하는 까닭에 二十前 青嬌이 許多하고 寡婦되면 依例히 守節해야 生育을 永絕하니 寡婦된 者에 私情만 可矜할 뿐 不啻라. (『서우』 8호)

위의 담론 역시 혼인의 과정에 배우자 당사들의 의견이 수렴될 통로가 갖춰지지 못한 혼속을 비난하고 있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선악심정’의 마음자리에 대하여 알 수 없으므로 상대방 배우자가 양인의 안목에 흡족할 리가 없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서 ‘백년동거’ 하는 귀중한 관계를 맺게 하는 혼인이 단지 양가 부모와 당내 친속들 만의 ‘자의’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혼을 비난하는 담론은 혼인에 있어 신랑신부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신랑신부가 자신들의 결혼의 주체자가 되어야 할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었다. 즉 ‘어떤 여자하고 혼인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는 미혼자의 질문에 기혼자는 ‘별수 없이 보고 정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황성신문, 1907. 8. 22), 이러한 주장은 결혼 전 신랑신부의 만남을 결혼의 한 과정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당시 억혼인 조혼에 대한 비난에는 혼인에. 신랑신부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혼인에 배우자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의 이면에는 혼인이 성인의 통과의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혼이 아닌 성인의 통과의례로서 혼인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혼인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은 성인의 신랑신부가 자신들의 혼인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아지고 있었다.

## 2. 부부윤리의식: 가족내 주요한 관계로 대두되는 부부관계

유교사회에서는 부부는 남녀관계의 ‘결합’을 의미하면서 가계계승을 위한 합법적인 통로로 정의 내려졌다. 그러므로 ‘인간의 략사는 부부에 과할자’(황성신문, 1899. 5. 12)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부부됨은 ‘유자생여’를 통해 인간된 도리를 다하고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필요조건이었으나 조선사회에서 부부관계는 전체 가족관계에 비추어보아 큰 의미가 부여되지 못하였다. 즉 조선조 전통사회에서 ‘부부’는 적자를 생산하는 단위로 그 관계의 정체성이 규정되었고, 그러므로 ‘효’로 대표되는 유교적 가족윤리에 비추어 보아 부부관계는 그 중요성이 상실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부부관계를 맺게 하는 통과의례인 ‘혼인’은 개인의 만남이 아닌 가문의 만남으로 강조된 채 혼인에 있어 배우자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한 가문에 시집가는 여성에게는 ‘아내’의 역할보다는 ‘며느리’의 역할이 강조되었는데, 며느리는 인고의 세월을 겨치면서 자신의 아들이 가계계승자로 지위를 굳힌 후 그 아들의 어머니로

8) 돈목(敦睦): 정이 두텁고 화목함.

9) 경홀(輕忽): 경박하고 소홀함.

10) 몰염(沒廉): 염치가 없음. 몰염치(沒廉恥)의 준말

자신의 입지를 넓힐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족내에서 부부관계 및 그로 인해 맷게되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과 지위는 아들이자 며느리 혹은 아버지 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지위에 비해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관계를 규정짓는 유교적 윤리의식은 개화기에 이르러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음을 조흔의 담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통과의례로서의 혼인은 개인에게 새로운 지위와 역할, 그리고 그것에 걸맞은 역할수행을 기대하게 된다. 따라서 혼인을 하게된 남자와 여자는 자연스럽게 '남편' 이란 지위와 '아내'라는 지위를 갖게 되면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흔으로 인한 어린 남녀의 지위변화는 그 지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지식인들은 소학교에서 있어야 할 아이들이 '아내를 거느리고 남편을 데리고 살라 하니 그 아이들이 무슨 지각이 있어 남편노릇을 할 줄 알며 아내노릇을 할 줄 알리요'라고 하면서(독립신문, 1898. 2. 12) 어린아이에게 급작스럽고 강제적으로 부여된 결혼지위를 비난하였다. 즉 조흔으로 부부가 된 어린아이들이 실제로 '인간 부부의 쾌락한 참 재미'를 어찌 알겠느냐고 하면서(독립신문, 1899. 10. 7), '남녀간에 살림을 능히 할 만한 연후에 혼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독립신문, 1898. 3. 24). 특히 개화기에는 처와 자녀에 대한 남편의 부양의무가 유달리 강조되었는데, 즉 혼인을 행한 남편에게는 '불가불 그 아내와 그 생기는 자녀를 보전할 직책'이 생기면서 '그 집에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철도 없고 공부도 없는 어린 남아는 이런 중대한 일을 잘 할 수 없다고 하면서(『가정잡지』, 1년 4호) 의식을 준비할 능력이 없이 아내를 얻는 것은 '세상에 몹쓸 고생' 되는 일로 설명하고 있었다(독립신문, 1898. 2. 12).

이와 같이 부부간 역할과 그 수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당시의 담론은 결과적으로 부부됨을 가족과 사회와 국가 성립의 기본적인 단위로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주장은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음의 담론과 일맥상통한다.

집안이 화락지 않고 만사가 잘 되는 자 없도다 안녕 행복의 방해가 이에서 더 큰 것이 업고 또 그 중에 제일 관계가 크게 있는 것은 혼인하는 일이라 세상에 사람이 생긴후에 남녀간 합하여 배필이 되지 아니하면 가족의 사회를 이룰수도 없고 인류가 번성하여 국가 사회도 될 수 없고 기타 천만 사위의 경여도 없을것이요 인세상에 자연이 있는 복낙을 누릴 수도 없나니 부부의 관계가 그렇게 중대한 즉 그 부부되는 절차를 제일 주의하여 소홀한 폐가 없게 하는 것이 가위 인세상의 큰 근본을 안다 할 것이오 또한 부부란 것은 남남끼리 합하여 평생을 동락하고 자손을 생육하여 문호를 보전하고 가정을 전하는 일인즉 어찌 범연이 생각할 바리오. 남녀가 장성하여 신랑 신부의 지각이 낙낙한 후에 그 재덕을 서로 비교하여 그 부모와 신랑 신부 마음에 일호라도 결점이 없은후에 성흔하는 것이 가위 근본을 알아 행한다 할 것이요 결단코 부부의 백년 대계와 가문의 큰 근본 되는 일을 다만 매파의 전언만 신청하던지 강보에 싸인 어린 중에서 취할 것은 아니로다 (『가정잡지』 1년 7호).

담론은 부부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혼인의 절차는 '소홀하기 그지없다'고 하면서 혼인이 성인의 통과의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즉 혼인이 성인들의 의례임에도 불구하고 조흔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의 결혼지위가 변화되고 이로 인해 수반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수행의 능력 부재는 곧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담론은 개인 가족 사회 속에서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흔의 폐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혼인으로 얻게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가족 안에서 이 두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두 관계의 안녕이 곧 가족과 사회의 안녕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에서 가족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지위 안에 힘들되어 있던 남편과 아내의 지위와 그 관계의 중요성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부갈등을 양산시키는 원인으로 지적 받았던 억혼으로서의 조흔에 대한 비난은 혼인에서 배우자의 의사결정의 권리가 수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주장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부부관계의 중요함을 간접적으

로 강조하는 효과를 놓고 있었다. 전통적인 유교적 윤리의식에서 결혼은 개인의 만남이라기보다는 가문과 가문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인을 '장차 두 집안이 좋게 합하여 위로는 종묘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사를 잇는 것' (『내훈』)으로 정의내림으로써 그 중요한 목적을 가문을 이어나갈 가계계승자의 생산에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내의 주요 임무중의 하나는 가계를 계승해 나갈 아들의 생산에 있으며, 결혼생활에 있어 부부간의 친밀함은 '부계적 가족주의'에 비춰볼 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개화기에 이르러 부모의 뜻과 강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혼인을 '억혼' 혹은 '압제혼'이라고 하는 비난에는 자녀의 결혼이 기부장을 중심으로 한 부모의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달라진 결혼윤리의식을 제안하였고 이는 다시 새로운 부부윤리의식을 주창하기 위한 근본적인 바탕으로서 그 의미가 강조되었다. 즉 개화기 결혼의 풍속에서 조혼에 대한 부당함은 신랑신부를 결혼의 주체자로 강조하게 되는 등 결혼윤리의식의 변모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전체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가 점하는 지위와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므로 장성한 후에 남녀가 자기들의 평생을 예산하여 자유권으로 자원하여 부부가 될 것 같으면 화합지 아니한 부부가 없을 터' (독립신문, 1898. 2. 12)라고 하는 등 부부가 불화한 상태에서 건강한 가정을 도모할 수 없으며,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불안정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림들이라는 논리로 조혼 개혁의 필요성을 당위적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 3. 부모윤리의식: '부모의 소유물에서 사회의 공물로' 변화되는 양육관

조혼이 일상에서 만연하게 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가계'의 영속화를 확고히 해주는 측면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혼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개화기의 지식인들은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의 혼인을 강행시키는 이들의 부모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그 조혼의 이(利)를 부모의 '이(利)'로만 국한시켜

해석하고 있었다. 즉 지식인들은 아직 털도 덜 마른 어린 남녀들을 혼인시켜 부모의 무릎 아래에서 쌍쌍이 놀게 만들고, 이것을 '인간에 비할데 없는 제일 낙시'라고 칭하는 부모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 치 못함이 어찌 그리 심하고'라고 개탄하면서(독립신문, 1899. 10. 7) '조혼의 이익은 개인적인 일이고 조혼의 폐해는 국가적인 일' (황성신문, 1906. 7. 23)로 또 조혼은 '국가와 인민에게 큰 해'가 된다는 논리(제국신문, 1907. 9. 19)로 조혼폐지의 담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던 '문명개화', '부국강병'을 앞에 조혼의 이(利)는 그 설자리를 잊고 있었는데, 특히 어린 자녀를 혼인시키는 부모는 조혼으로 자식에게 해롭는 생각지 않고 단지 자신의 재미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부모로 매도되면서 조혼을 둘러싼 담론에서 그 비난의 화살은 조혼을 강행시키는 부모에게 모아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조혼을 '인간 제일의 죄'로 단정짓고 있는 『여자지남』의 다음 담론은 어린 자녀를 혼인시키는 부모를 푸른 감을 염수에 담가 홍시 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유하면서, '자녀의 신체가 장성치 못한 자를 혼인함이 대단 불가' 하기 때문에 자손을 사랑하고, 자신의 집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한 방법으로 인류에 크게 관계가 있는 가족(嫁娶)를 가려 해야 하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습관을 볼진데 부귀를 겸전하여 호화롭게 지내는 사람들은 자손이 십세만 겨우 지내면 이성의 친함을 행하여 슬하의 재미를 보는 것이 인간 제일 립으로 아니니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하면 인간제일 죄를 지음이라 하니니 비컨데 한 사람이 감나무를 심으고 날로 김매고 복도 두워 잘 기를 세 몇 해를 지낸 후에 가지가 번성하고 잎이 무성하여 꽃이 피어 열매가 맺는지라 그 사람이 이것을 보고 회한이 여기여 급히 홍시 되기를 기다릴 세 자기 생과과 같이 되지 아니함을 한탄하여 급히 홍시를 만들 세 푸른 감을 따서 염수에 담가 두고 홍시 되기를 고대할 세 수일 후에 그 감이 붉었는가 자세히 본 즉 붉기는 고사하고 썩은 냄새가 축비하는지라 그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 이

치를 알지 못해야 근심하였다 하니 격언이로다 … 성미에 조급함을 인하야 허다 노력한 것이 일조에 귀허할 뿐 아니라 도로혀 지각없는 자가 되었으니 진실로 개탄할 바이라 이와같이 조흔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생전에 재미보기만 원하고 장래 자손의 해됨은 생각지 아니함이 이에서 더 심한 바 있으리오 (『여자지남』, 1권 1호).

독립신문 역시 조흔을 '아직 익지 못한 푸른 감을 지레 따서 소금물에 담궈 그 단맛과 그 일찍 붉을 것만 탐하고 그 감이 썩고 패하여 벌리지가 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이러한 썩고 패하는 화근'을 감나무의 임자 즉 '부모들의 죄'로 단정지었다(독립신문, 1899. 7. 20). 그리고 조흔을 강행하는 부모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무엇보다도 자식이 부모만을 위하여 존재해서는 안 된다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저 하늘이 사람의 자녀를 만드실 때 천륜만 소중 할 뿐 아니라 허다한 의무와 허다한 사업으로 그 부모에게 부탁하여 가르쳐서 세상에 쓰이게 함이요 결단코 한 사람에게 매임이 아니니 우리 나라 아들 둔 동포여 여러분이 아들을 사랑하여 기를 때에 아들에 덕을 보고자 바라지 마시오 삶을 받고자 버리지 마시오 아들 보기를 내 것으로 보지 마시고 이 세상에 일하라온 일군으로 아시고 진실하고 용맹스러운 일군을 만들기를 힘 쓰시오 참 여러분의 아들이 이 세상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큰 사업을 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께 썩도 드리고 공도 표하리다 슬프다 아들 둔 동포들은 아들은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기쁘게하고 자기에게만 화초 노릇하게 생진줄 아니 어찌 절통 치 않으리요 부모 되는 이 아들을 기를 때에 주야 생각하기를 이 자식이 자라나서 나를 잘 봉양하여 의복 음식과 일동 일정을 내 비위에 맡고 내 몸만 편케 하고 내 일평생에 걱정이 없게하여 나만 위하는 것이 자식이라 하고 좀 자라 어머니 젖을 면할 만 하면 장가를 들여 초립동이 당홍 치마가 앞에서 얼른 얼른 하는 각시 노름을 이위에 없는 재미로 알며 좀 있으면 손자 보기로 지성으로 바래고 장래와 세상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니 어찌 부모 된 이의 할 직분이라 하리요 그 뿐 아니라 그러한 자식은 장래 부모가 죽으면 아모것도 할 능력이 없어 세상에 쓸 때 없는 물건이 되나니 어찌 아깝지 않으리요 그런고로 아들을 자기의 위로 거리로만 생

각하고 아들에 장래를 생각지 않는 부모들은 죽을때에 한가지 데리고 가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위하여 유익 할 듯 하도다 (『가정잡지』 1년 3호).

이상의 담론은 자녀는 부모 한사람에게 매인 소유물이 아니므로 부모가 자녀양육의 대가를 바란다던가 그 '자녀의 덕'으로 자신의 노후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녀를 '이 세상에 일하라 온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담론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태어난 줄 알아 어머니 젖을 면할 만하면 장가를 들이고 있는 부모들의 태도에 절통해 하면서 자식의 장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부모는 세상의 유익함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어조로 '나만 위하라'는 부모의 양육관을 혹독하게 비난하였다. 이처럼 개화기의 담론은 자녀양육의 주체가 되는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보다 자녀를 '가르쳐서 세상에 쓰이게 해야 한다'는 새로운 양육관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 부모의 역할은 곧 조선인으로서의 당위적인 사명처럼 비춰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면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공물(公物)'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즉,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에 대한 개화기 지식인들의 비난은 자녀를 '공물'로 여겨야 한다는 새로운 양육관을 임태시키고 있었다. 「자유종」의 국란은 '자식의 효도를 받는 것이 어찌 내 몸만 잘 봉양하면 효도라 하리요? … 자식이라는 것이 내 몸만 위하여 난 것이 아니오, 실로 나라를 위하여 생긴 것이니 자식을 공물이라 하여도 합당하오」(자유종, 전집 2권: 158.)라고 하면서 자녀를 사회의 '공물'로 키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양육관의 변화는 곧 새로운 부모됨의 직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개화기에는 부모의 가장 기초적인 직무로서 '자녀교육'이 강조되었다. 즉 담론은 문명한 사회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로 자녀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에 힘을 써서 이십여세까지 그 자식교육을 시키는 것'이 부모 된 의무로 규정하였다(체국신문, 1907. 10. 13). 그리하여 부모는 자녀를 강장(強壯)하게 양육시켜 그 자녀가

자립적 힘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비춰지는 가운데 자식을 ‘한 가지 업과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사회적 존재로 성장시킨 후 비로소 결혼을 시키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며, 이것이 부모됨의 ‘쾌락한 참 재미’라고 하면서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안락을 위한 보장책이 아님을 강조하였다(독립신문, 1899년 10월 7일). 「자유종」의 매경 역시 한참 배워야 할 자녀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단지 자식의 노동력만을 요구하는 부모는 자식의 신체를 망칠 뿐 아니라 종국에는 망국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었다(「자유종」, 전집 2권: 160-161.) 그려므로 ‘어린아이는 나라에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이 되는 아이를 ‘교육하지 아니하고 귀히 여기기만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근본도’ 아닐뿐더러 이러한 부모를 나라의 안녕을 그르치는 ‘죄인’으로 매도하였다(제국신문, 1899. 2. 24.).

#### 4. 자녀윤리의식: ‘어린아이’로서의 권리가 부여된 자녀

개화기의 지식인들은 조혼이 타파되어야 할 주요한 근거로서 자녀의 ‘몸의 건강’의 손상을 제기하고 있었다. 담론은 조혼을 ‘풀의 음이 시초 자라날 즈음에 서리와 눈으로 그 연약한 바탕을 눌러 죽’ 이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조혼으로 인하여 어린 자녀들은 ‘평생에 활발한 생기를 다시 회복지 못하게 하며 이뿐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신령한 뿌리를 찍어 상케하여 무슨 생각이든지 더디고 둔하여 꾀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독립신문, 1899. 10. 7). 또한 조혼은 자녀 개인의 건강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약한 백성을 양산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비난되었다. 즉 나이 어린 자녀가 혼인을 하고, 또 ‘색(色)’을 알게 됨으로써 자녀의 신체적 건강이 손상될 뿐 아니라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자녀들이 또 자식을 낳음으로써 쇠잔한 백성이 양산된다고 하면서 조혼을 비난하였다. 지식인들은 담론을 통하여 조혼이 ‘제일 국가에 해롭 일은

꼴격이 자라기 전에 아이들이 혼인을 하여 자식들을 낳으니 그 자식들이 튼튼치가 못하고 사람의 씨가 차차 줄어가는지라’(독립신문, 1896. 6. 6)라고 하면서 조혼이 금지되어야 만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자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었다.

혼인을 일찍이 하면 첫째로 해 됨이 나라 인민의 원기가 주는 것임이 … 천하 만물의 나고 자라고 익는 것이 다 각각 천리의 정한 때가 있나니 실과 나 곡식이라도 익기 전에 미리 먹는 것은 천리의 정한 법을 어김이라 … 하물며 만물중 제일 귀중한 인생이 천리의 성숙하는 때를 어기고 미리 혼인하면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뇨 과연 대답하기 어려울지라 사람이 어려서 혼인하면 악하고 병이 많고 오래 살지 못하며 이런 사람이 일찍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일찍이 혼인하여 더 악한 자녀를 낳아서 이같이 점점 오랠수록 인종이 차차 조잔하며 연약하고 병이 많아 일을 하여도 씩씩하고 활발치 못하며 공부를 하여도 총명치 못하고 견딜 성이 없어 응당 할 것을 능히 감당치 못함으로 나라 일이나 제 집안 일은커녕 한 몸도 잘 보전치 못하여 심히 가련하고 빙곤한 지경에 이르며 가뜩 어리석고 약한 중 가난을 겪하니 모든 일이 다 구차함으로 기운이 점점 궁축하여 활발한 기상이 없어짐으로 이런 가정들이 모여 사는 나라는 기운이 줄어 쇠잔하는 법이라(『가정잡지』, 1년 4호)

개화기의 지식인들은 대한 인구가 더 번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혼에서 찾고 있었는데, 즉 어린 남녀의 혼인을 ‘충실치 못한 열매’를 심은 것에 비유하면서(『가정잡지』 1년 7호), 여물지 않은 열매를 심으면 그 씩이 부실한 것처럼 장성하지 않은 남녀가 자식을 낳으면 선천이 부족한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하였다(제국신문, 1907. 10. 12).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이가 나매 위생을 지극히 보호하며 운동을 잘 시키여 신체가 강건케’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특히 어머니는 ‘소아 위생편을 공부’ 하도록 독려 받고 있었다(『자선부인회 잡지』, 1호).

이처럼 당시의 지식인들은 건강한 아동이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으며, 건강한 성인이 건강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우생학적 논리를 기초로 하여 자녀의 건강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당시

조선이 처한 위기적 상황 안에서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왔는데 ‘천이 물(物)의 경쟁을 택하매 그 경쟁력이 적당한 자는 생존을 득하고 경쟁력이 부적당한 자는 생존이 부득이라’(황성신문, 1908. 4. 8)는 표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이 살아남는 길은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있었고 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사회구성원이 확보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지식인들은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 갈 동량인 자녀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강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자녀의 ‘몸의 관리’를 언급하고 있던 조흔의 담론에서 자녀를 ‘어린이’로 보고, 자녀에게 ‘어린이기’<sup>11)</sup>를 부여하고자 했던 지식인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자녀를 어린이로 조망하면서 어린이의 인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로 자녀가 어린이로 살 수 있는 시간인 ‘어린이기’가 형성된 것이다. 사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공물’로 여겨야 한다는 양육관의 변화 역시 자녀를 사회의 ‘어린이’로 조망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다. 따라서 자녀를 사회의 ‘공물’로 여겨야 한다는 인식은 자녀에게 어린이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자 했던 변화된 사회적 인식의 결과를 의미한다. 즉 조흔의 담론 안에서 지식인들은 가족 안의 자녀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시간의 ‘어린이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감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푸른 감이 붉은 홍시로 성장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과 김을 매고 복을 돋우는 정성이 필수 불가결한 것처럼 자녀가 조선의 운명을 밝게 해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어린이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때 어린이에게 조흔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조흔은 더욱 타파되어야 할 혼속이 되었다. 그러므로 자녀를 사회의 동량으로 보고자 했던 인식의 전환은 자녀를 어린이로 발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조흔금지는 어린이기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 어린이로 자녀를 인식하면서 자녀에게 ‘어린이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매우 의미 있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다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이자 백행의 근원으로 제시되었던 ‘효윤리’의 실천양상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었다. 당시의 담론은 충이 진정한 효라고 하면서 가족의 구성원이 전에 국민된 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sup>12)</sup> 그러므로 부모 개인의 봉양에만 힘을 쓴 것은 진정한 효성이 아니며, 문명한 나라의 효는 ‘부모의 은혜 받은 이 몸이 나라와 국민의 의무를 지키고 국민된 직분을 다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성’ 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나라의 사업을 하는 것’이 참으로 ‘부모에게 효성하는 것’ 이기에 당시의 엘리트 지식인들은 ‘국민 동포의 공익(公益)을 위하여 공부를 더 하고 있습니다’라고 부르짖게 된 것이다(「은세계」, 전집 1권: 458).

이와 같이 자녀를 ‘어린이’로 보게 하는 인식의 전환은 이들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일련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자녀 개인에게는 어린이로서의 권리가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과 권리 는 ‘교육’에 모아졌으며, 그 출발은 이들을 ‘근대학 교 교육기관’에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당시의 지식인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를 학교라는 제도적 기관에서의 자녀교육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에 걸림돌이 되는 조흔은 더더욱 근절되어야 할 혼속이 되었다. 담론은 조흔이 특히 자녀의 교육기회를 박탈한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었는데, 그 한 예로 「혈의 누」의 작가 이인직은 구완서의 입을 빌어 자녀교육을 위하여 조흔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구) 「… 내가 우리 나라에 있을 때에 우리 부모가 내 나이 열두서너 살부터 장가를 들어려 하는 것을 내가 마다하였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조흔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공부하

11) 우리 나라의 ‘어린이기’의 형성에 관한 연구는 김혜경 (1998) 참조.

1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전미경(1999), pp.211-214 참조.

여 학문 지식이 넉넉한 후에 아내도 학문있는 사람을 구하여 장가들겠다. 학문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입에서 쳇내가 모랑모랑 나는 것을 장가들이면 짐승의 자웅같이 아무 것도 모르고 음양 배합의 낙만 알 것이라. 그런고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짐승같이 제 몸이나 알고 제 계집 제 새끼나 알고 나라를 위하는 고사하고 나라 재물을 도둑질하여 먹으려고 눈이 벌겋게 뒤집혀서 돌아다니는 것이 다 어려서 학문을 배우지 못한 연고라. … 남과 같은 학문과 같은 지식이 나날이 달라가는 이때에 장가를 들여서 색계상에 정신을 허비하면 유지한 대장부가 아니라. …」(『혈의 누』, 전집 1권: 44.)

구완서는 단지 음양 배합의 낙만 알게 하는 조혼을 ‘짐승의 짜젓기’로 비유하면서 조혼은 학문 정진의 방해물일 뿐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과중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병리적인 가족이기주의가 초래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주시경 선생 역시 한 나라의 문명의 척도를 혼속을 통하여 가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문명한 나라에서 혼인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공부’를 제시하고 있었다(『가정잡지』, 1년 4호).

개화기에는 구국의 열쇠로 학교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조혼폐지의 당위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배경이 되어 조혼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그 설득력을 잊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자녀가 가정 안에서 갖게 되는 일련의 역할보다는 사회 안에서 기능해야 하는 역할을 강조하게 하는 매우 의미있는 요인이 되어 자녀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자녀를 사회의 ‘어린이’로 조망하게 하는 주요한 바탕이 되었다. 즉 조혼의 폐지를 주창하는 담론은 자녀에게 사회의 ‘어린이’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 당위성을 고양시키고 있었다. 개화기에 열풍처럼 전국을 들끓게 했던 신식교육은 사회의 어린이인 자녀의 권리로 부각되면서 자녀교육은 사회의 ‘공물’인 자녀를 키워야 하는 부모됨의 새로운 직무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자녀’ 즉 개인이 가족 속의 한 가족원에서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향함과 동시에 ‘국민된 분자’란 정체감이 우선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조선

은 ‘개화자강’을 위하여, 그리고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암울한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능한 개인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에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앞서 가정인으로서의 남편, 아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다차원적 역할이 일찍 주어지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 V. 조혼 담론의 함의

가문의 발전 혹은 가정의 안녕을 위하여 어린아이를 결혼시키는 조혼은 분명 전근대적인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혼속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조혼에 대한 비난은 이러한 혼속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윤리의식에 대한 비난에서부터 출발되었고, 이러한 주장에서 ‘근대적’이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윤리의식이 생성되고 있었다. 즉 억혼, 억혼으로 말미암은 부부관계의 파탄,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를 ‘전근대적’이라고 지칭한다면, 부모가 아닌 결혼 당사자인 신랑신부가 결혼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가족 안에서 부부관계가 하나의 중요한 관계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공물이며, 공물로서의 자녀를 사회의 ‘어린이’로 조망하면서 어린이의 권리가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분명 근대적 가족윤리의식의 단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조혼을 ‘문제’로 규정짓고 있는 당대 지식인들은 ‘조혼담론’ 안에서 조혼의 문제를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어떤 맥락에서 조혼이 하나의 문제로 구성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화기 조선인들이 열강에 대한 위기의식에 비례해서 강조되었던 ‘국가 우선주의’, ‘애국’에 대한 열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화기의 ‘국가’는 조선의 모든 것을 그 하위에 들 수 있는 최고 정점의 위치에 있는 대상이었다(전미경, 2001b).

우리는 한국 사람을 대하여 말하기를 아침에도 국가가 하고 저녁에도 국가국가하여 쇠불이라도 거의 달케 되었거늘 이제 또 국가 두자를 가지고 논히 하는 것이 우리도 넘어 지루하거니와 묻는 자도 또한 지루하리로다. 그러나 지금 한국 형편을 보건대 … 부득이하여 한국 사람의 마땅히 지킬 국가주의라 하는 문제로 우리 동포에게 설명하노라 (대한매일신보, 1909. 6. 18.)

그리고 이러한 국가 우선주의적 사고는 곧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애국'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애고 답답 설움이야 이 일을 어찌 하나 / 목석이 아니어든 나라 형세 워 모르나 / 목숨은 살았으나 살았다고 할 수 있소 / 총소리 나는 곳에 유죄무죄 분간 없고 / 네모 말장<sup>13)</sup> 꽂는 곳에 내 땅이라 할 수 없고 / 정부대관 끼는 곳에 내 나라라 할 수 없네 / 외국의 사람들은 물밀 듯 들어오고 / 저 사람의 세력범위 불 봇듯 치성한데 / 이곳에서 못살자면 저 곳으로 간다 하나 / 그 곳도 몇 날 후면 또 못살게 되겠구나 / … / 죽어도 이곳이오 살아도 이나라니 / 내 나라와 내 자손을 보전할 뜻 있거든 / 이를 같고 분발하야 우리 직분 다해 보세 / 애고 답답 설움이야 이 일을 어찌 할꼬 / 죽었느냐 살았느냐 대한에 사람 없나 / 죽었거든 살아나고 잠자거든 깨어나소 / 민충정 김봉학은 죽어서 보국이나 / 우리는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가며 / 죽을힘을 다 하여서 나라 일을 잘해 보세 / 선뜻 죽긴 비난일세 자제 할 것 없을지니 / 어서어서 열심하여 남과 같차 문명 하야 / 우리 권리 찾은 후에 태극기를 번 듯 들고 / 만만세 불러 보세 잘 하면 살수 있고 / 잘못하면 죽을지라 애고 답답 설음이야 / 이 일을 어찌 하나 애구 애고 애고 / 동포 동포 동포야 (대한매일신보, 1907. 8. 15.)

개화기의 삶과 죽음 모두는 '국가'와 '애국'의 범위 안에서만 그 당위성을 인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조혼의 문제점 역시 '국가'라는 층위에서 비난되고, 조혼 담론 안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윤리의식 역시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조혼의 폐지는 '인종이 왕성하며 나라가 부강문명하게 되기' (『가정잡지』, 1년 4호.)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혼의 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서 언급되고 있는 각각의 하위 범주 즉 조혼으로 말미암아 인종이 감소되고, 인재가 결핍되며, 교육이 쇠락할 뿐 아니라 산업의 폐해함이 악순환 되며, 청소년에 대한 과중한 책임과 지기(志氣)의 박약해지고, 가정이 불화되는 등의 폐(황성신문, 1909. 9. 3: 9. 4)는 모두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적되고 있었다. 조혼은 국가적으로 볼 때 경쟁력을 상쇄시켜 '손해' 만을 도출하고 있다고 비난되면서 동시에 조혼폐지는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즉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강한 인종'이 필요했고, 많은 인재는 부강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자원이었으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은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산업의 활발함으로 '국가'의 풍요를 보장할 수 있고, '청소년'은 '국가'의 앞날을 밝혀 줄 동량이었기에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로 했던 것이었으며, 화락한 가정은 곧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바탕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조혼의 담론 안에는 '국가'가 끊임없이 개입되고 있었다. 이것은 조혼과 마찬가지로 개화기에 계몽의 대상으로서 부각된 축첩제와 과부개가금지의 담론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었다. 축첩제는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가족제도로, 과부개가금지는 '국민' 생산의 걸림돌로 비난되면서, 그 타파의 당위성을 '국가'에 두고 있었다 (전미경, 2001a: 2001b 참조).

이와 같이 개화기에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국가'는 곧 새로운 '국민'을 요구하고 있었고, 가정은 이러한 '국민'을 길러내기 위한 장이 된다. 따라서 조혼금지 등 계몽이 실천되어야 할 장으로서의 '가정' 안에 국가의 개입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개화기에 '가정'은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는 기초 단위로 강조되고 있었다. 가정은 건강한 성인이 그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혼을 통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이렇게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결혼을 통하여 맺게 된 부부는 '화락한 가정'의 필요 충분조건이 되어 '국가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13) 네모 말장: 네모난 말뚝

있으며, 자녀는 더 이상 부모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공물(公物)’ 이기에 부모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하여 자녀의 조혼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되었고, 조선의 작금의 암울한 상황을 밝혀줄 아직 덜 자란 ‘국민’ 즉 사회적 공물인 자녀에게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보호되어야 할 존재’가 되어 어린이의 권리가 부여되고 있었고 이것은 ‘어린이기’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와 같이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은 ‘문명한 가정’의 건설, 즉 ‘가정’에 대한 계몽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면은 대한매일신보가 수일에 걸쳐 연재한 ‘가정주의’란 담론(대한매일신보, 1908. 3. 12-22.)안에서 확인하게 나타난다. 여기서도 ‘남녀 팔구세에 혼인하는 습관을 제하고 십팔구세로 성혼할 사’라고 하면서 조혼금지를 언급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혼인에 대한 새로운 지향점을 포함하여 이 담론은 위생, 교육, 인사, 의복, 음식, 상례, 사상이란 각각의 하위 영역에서 가정이 실천해야 할 항목들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이 안에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혼례와 상례의 통과의례에서 새롭게 지향해야 할 가정생활이 제시되고 있었다. 즉 먹는 것과 입는 것 등을 포함하여 화초를 심거나 방안 공기를 환기하는 일에서부터 하루 밥을 몇 번 지을 것인가, 부부간 성관계의 횟수에 이르기까지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시시콜콜한 일상에 ‘국가’가 개입하고 있었다. 인사할 때 ‘진지 잡수었소’ 혹은 ‘밥 먹었나’ 하는 말은 ‘폐지’하고 ‘일기가 좋소’로 인사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국가’를 위하여 이와 같은 사소한 일상들조차도 재정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었고 그것이 국가를 위한 것 이었을 때 누구도 그 새로운 질서에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되는 것이 개화기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개화기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가족윤리의식의 ‘근대성’ 안에는 ‘국가’가 개입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조혼의 담론 안에는 우리의 근대적 가족윤리의식의 형성과정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내포되

어 있다.

## VI. 맷음말

개화기에는 서양 열강의 침탈 행위와 이들의 문물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여서, 지식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들도 일상의 경험을 통해 이들을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당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인 모두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감은 조선의 제도와 윤리의식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조선사회는 제국주의를 앞세워 조선으로 밀고 들어오는 열강과 맞서 생존하기 위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급선무로 여겼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조선의 정치·경제·사회의 전반적인 제도와 윤리의식의 개혁을 절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조선이 일본이나 구미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문명국에 진입하기 위한 전제적 조건으로서 관습의 개혁을 주창하고 있었다. 국가의 자립을 ‘기도(企圖)’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식과 능력이 증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사상이 변화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상의 변이’를 위해서는 ‘불가불 습상(習尚)’의 개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면서(황성신문, 1909. 2. 13) 가족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개혁의 불가피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때 축첩제, 과부개가금지와 함께 조혼제도는 타파되어야 할 대표적인 가족제도로 지적 받고 있었다.

개화기의 지식인들은 조혼을 조선 제일의 악습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실제 일상에서 조혼의 금지를 도모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조혼타파를 위한 활발한 계몽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조혼의 해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조혼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의 당위성을 공고히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기된 이유는 당시의 가족윤리적 상황의 판도를 달리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즉 조혼의 담론에서는 당시의 보편적인 혼속이었던 조혼 안에 담겨진 가족윤리의식을 비난하면서 새롭게 지향해야 할 가족윤리의식을 제시하

고 있었다.

우선 조혼은 신랑신부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모에 의한 억혼으로서 비난받고 있었다. 그리고 억혼으로서의 조혼에 대한 비난의 초점은 억혼이 불행한 부부관계를 조장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식인들은 부부간의 화목을 위하여 의혼의 단계에서부터 배우자 당사자인 신랑신부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신랑신부를 자신들의 결혼의 주체자로 서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화목한 가정, 건강한 사회와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지식인들은 조혼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는 그 나이와 관계없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 지위가 부여되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은 제대로 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조혼타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혼의 담론에서는 건강한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한편, 개화기의 담론은 조혼을 강행하는 부모를 국가의 죄인이라고 하면서 혹독하게 비난하였다. 즉 어린 자녀를 혼인시키는 부모를 우매한 사람으로 비유하면서 조혼을 단지 부모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추구하는 혼속으로 단정지었다. 이때 지식인들은 자녀를 부모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유능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공물'로 조망하면서 자녀는 부모만을 위하여 있는 존재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조혼을 둘러싼 담론에서는 무엇보다도 조혼은 자녀의 건강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종국에는 나약한 백성을 양성시키는 기제로 비난받았고, 이러한 비난은 자녀의 '몸의 건강'을 관리할 책임을 부모와 사회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은 자녀를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조망하도록 인식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처럼 조혼의 담론에서는 '어린이기'를 발견할 수 있다. 자녀가 조선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유능한 자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 앞에 조혼은

더욱 더 근절되어야 할 혼속이 되었다. 다시 말해 개화기 자녀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상황에서 자녀를 사회의 공물로 여겨야 한다는 양육관의 변화는 자녀에게 '어린이'의 권리를 부여되고 있었다. 따라서 어린아이는 나라의 근본이므로, 어린아이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어린아이에 대한 사회의 책임은 근대적인 교육기관인 학교에서의 '교육'에 모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혼은 철저하게 '국가'라는 층위 아래에서 더욱 '문제적인 것'이 되었다. 다시 말해 조혼이 문제로 규정되는데 있어 '국가'는 그 당위성을 공고히 해 주는 배경이 되었다. 국가 우선주의 앞에서 가족과 개인의 욕구는 설자리가 없었기에 부모의 재미를 위하여 혹은 가문의 번성함을 위해서 실천되었던 조혼은 그 당위성을 잃고 있었다. 이와 같이 조혼의 담론 안에서 발견되었던 근대적 가족윤리의식에는 국가 우선주의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개화기에 '근대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윤리의식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의 한 대답을 조혼의 담론 안에서 찾고자 하였다. 억혼과 암제혼, 이로 말미암은 불행한 부부관계,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부모됨, 권리보다는 의무만이 강조되고 있는 자녀됨을 전근대적인 것으로 본다면 조혼의 담론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부정되고 있었고 이것은 곧 가족윤리의식에서 '근대성'으로 지칭될 수 있는 맹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대성이 일제로 접어들면서 변질되고, 해방과 전쟁 그리고 본격적인 산업화 정책에 의하여 다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볼 때, 이 새롭게 동태(動態) 되고 있는 '근대성'의 시초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1 차자료>

『순종실록』

## 『관보』

『내훈』(오영석 교주, 문조사) 1986.  
 『경남일보』(1909년 10월-1912년 2월)  
 『독립신문』(1896년 4월-1899년 12월)  
 『대한매일신보』(1904년 7월-1910년 8월)  
 『대한민보』(1909년 6월-1910년 8월)  
 『제국신문』(1898년 8월-1910년 8월)  
 『황성신문』(1898년 9월-1910년 8월)  
 『한국신소설전집』(서울: 을유문화사) 1968.  
 가정잡지사, 『가정잡지』, 1년 3, 4, 7호, 1907-1908.  
 여자보학원, 『여자지남』, 1권 1호, 1908.  
 서우학회, 『서우』, 8호, 1907년.  
 자선부인회, 『자선부인회잡지』, 1호, 1908.

## &lt;2차자료&gt;

김두현(1935). 조선의 조혼과 및 그 기원에 대한 일 고찰. 진단학보 2집, 46-86.

김민환(1988). 개화기민족지의 사회사상. 서울: 나남 출판.

김용옥(1982). 한국근대여성운동사 연구: 1880년 후반-1920년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혜경(1998). 일제하 '어린이기'의 형성과 가족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셸푸코 지음, 이정우 해설(1993). 담론의 질서. 서울: 새길.

장병인(1997). 조선전기의 혼인제와 성차별. 서울: 일지사.

전미경(1999). 개화기 가족윤리의식의 변화와 가족

갈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미경(2001a). 개화기 축첩제 담론분석. 한국가정관

리학회, 19(2), 67-82.

전미경(2001b). 개화기 과부개가금지 담론분석.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9(3).